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전실·내부울타리 중심

2022. 3.

CONTENTS

I. 전실 설치 기준 및 사례	1
1. 필요성	1
2. 규정에 따른 설치	1
3. 농장 여건별 설치 예시	4
II. 내부울타리 설치 기준 및 사례	13
1. 필요성	13
2. 규정에 따른 설치	13
3. 간소화한 설치 방법	15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수정안 신규대비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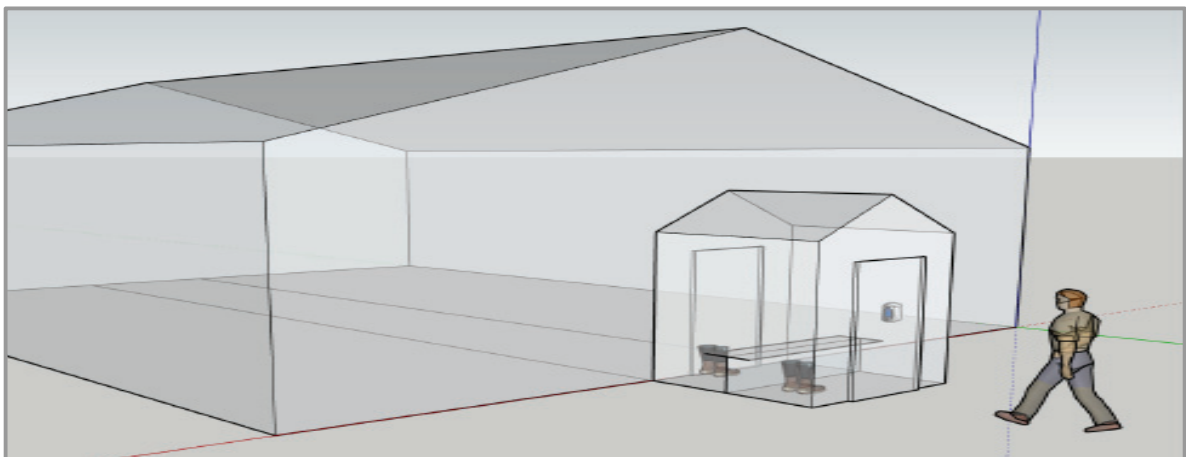
I | 전실 설치 기준 및 사례

1 필요성

- ❑ 전실은 바이러스 등 오염원(병원체)이 농장까지 들어왔을 경우 축사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설치·운영이 필수
 -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오염원(병원체) 유입 방지를 위해 장화를 갈아 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2 규정에 따른 설치

- ❑ (기준) 높이 45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평상 형태의 폭 1m 이상의 발판 설치 및 신발소독조(매트)·신발장·내부용 장화 등 비치
 - * 차단벽 또는 발판을 기준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역은 오염구역, 돈사 내부로 들어가는 구역은 청결구역으로 구분
 - (재질) 전실을 설치하는 재질·소재를 특정하지는 않으나, 바람·눈·비 등으로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설치
 - *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천막 등으로 설치 시에도 하부가 고정되어 흙 등 외부 유기물이 침입하기 어렵게 설치하는 것도 가능



〈돈방 외부 전실설치 개념도〉

- 돈사로부터 연결하여 차단·구획된 공간으로 전실 설치



〈돈방 외부전실 설치사례〉 전실 내부 차단벽, 신발장, 장화 등 비치



〈차단벽 사례 1〉 샌드위치 판넬 활용



〈차단벽 사례 2〉 플라스틱 재질 구조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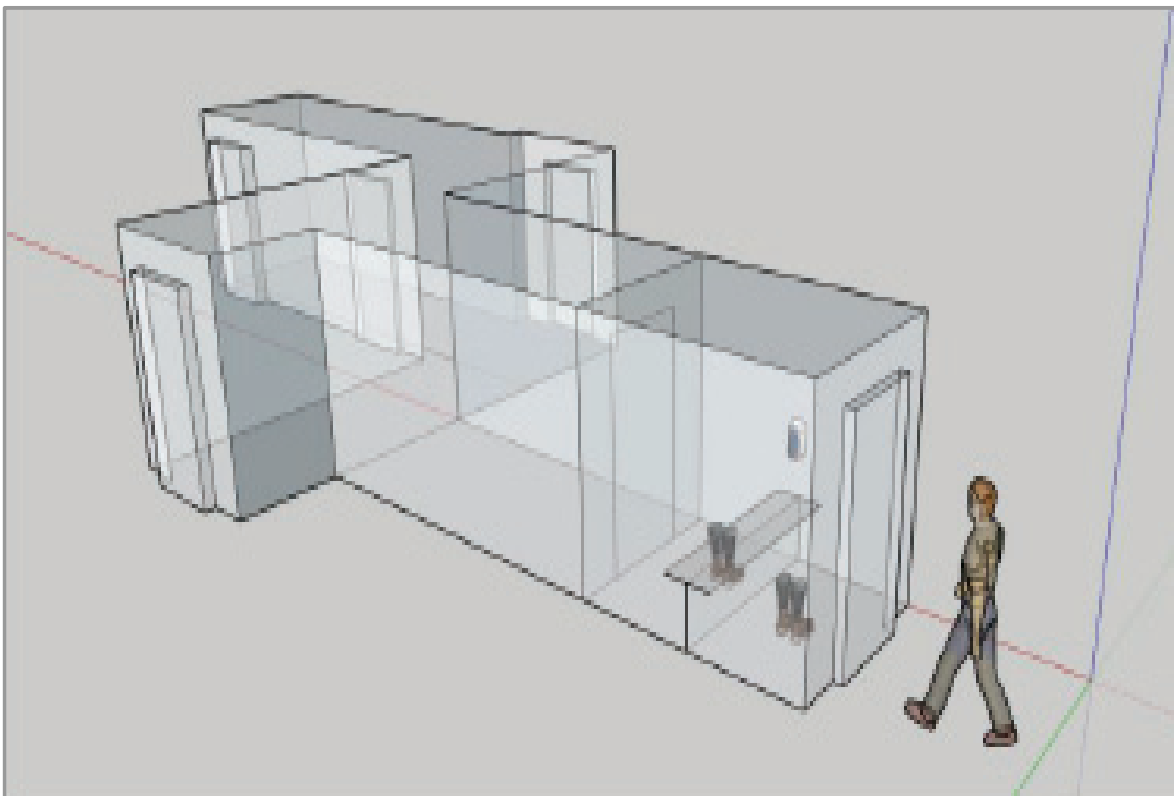
3 농장 여건별 설치 예시

1 공동전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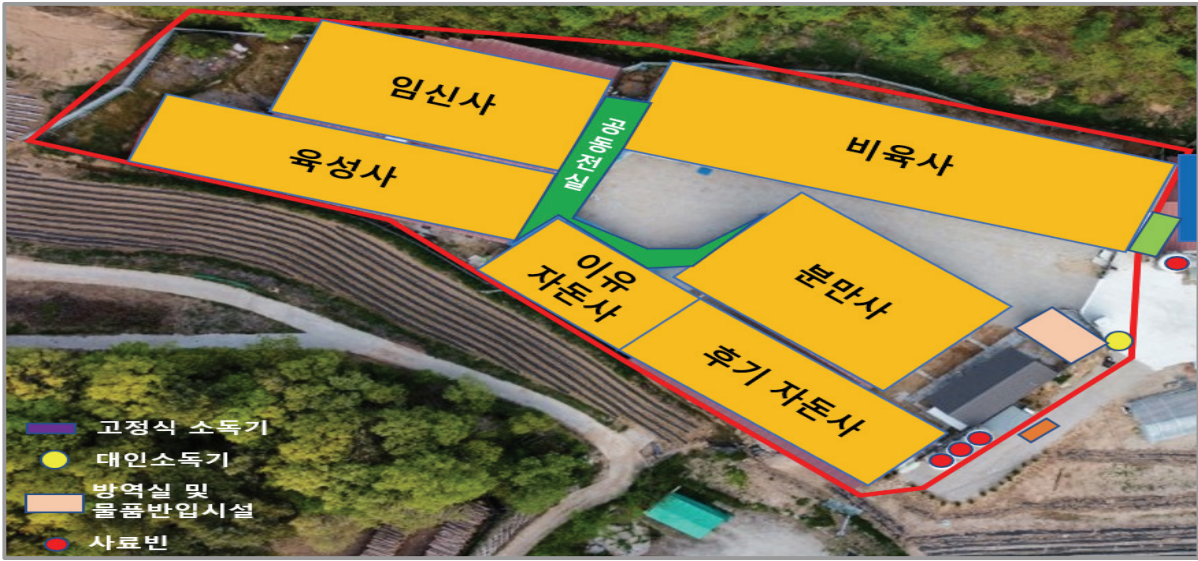
- 여러 돈사를 잇는 연결로가 있거나, 돈사가 여러 동이 있으나 배치가 단조로운 경우 모든 돈사의 출입구를 서로 연결하는 복도식 연결로*와 1개의 공동전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연결로 설치·관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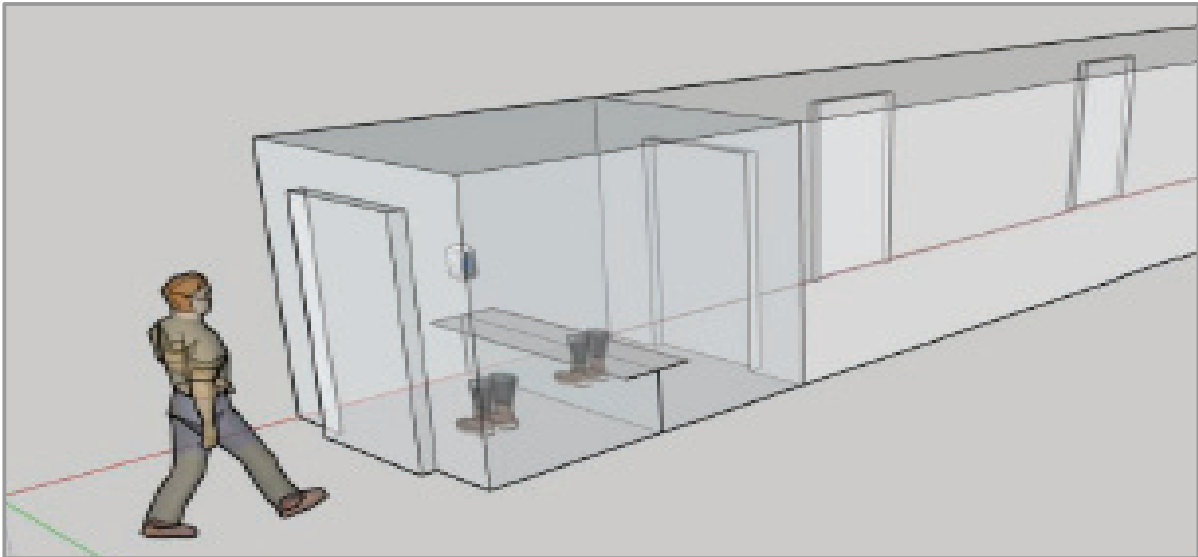
- 1) (바닥) 소독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여야 함
- 2) (지붕·외벽) 내구성 있는 재질로 외부인·야생동물·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이의 차단벽, 비가림시설 및 방조망을 설치
- 3) (내부) 전실과 동일한 수준의 청정상태 유지



〈공동전실 개념도〉



〈외부 복도식 공동전실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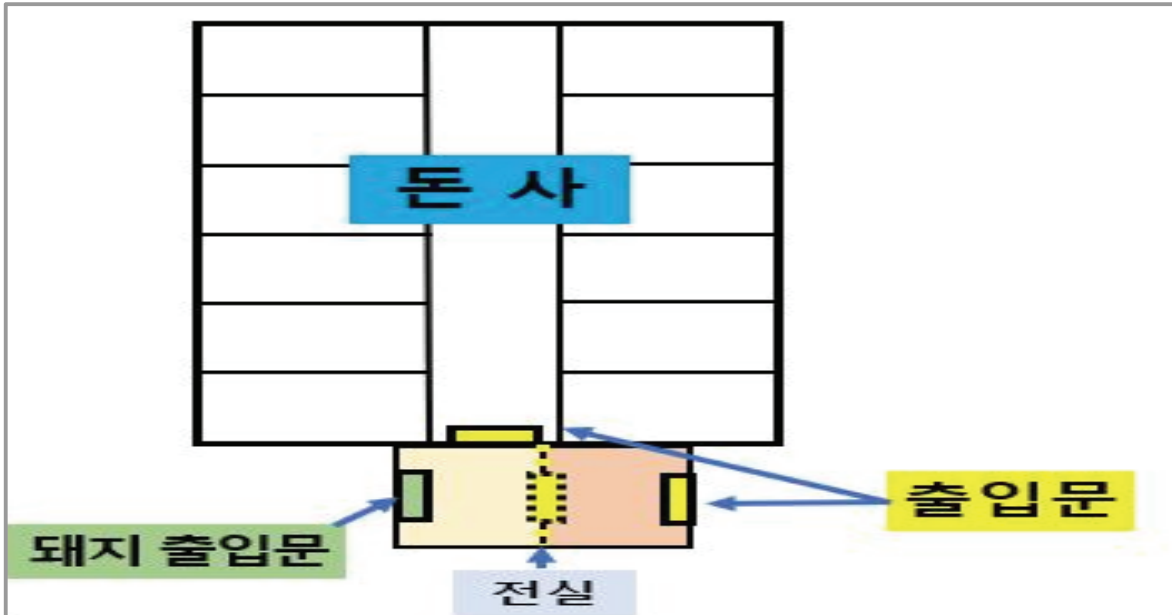
〈공동전실(복도형)〉



〈내부 복도식 공동전실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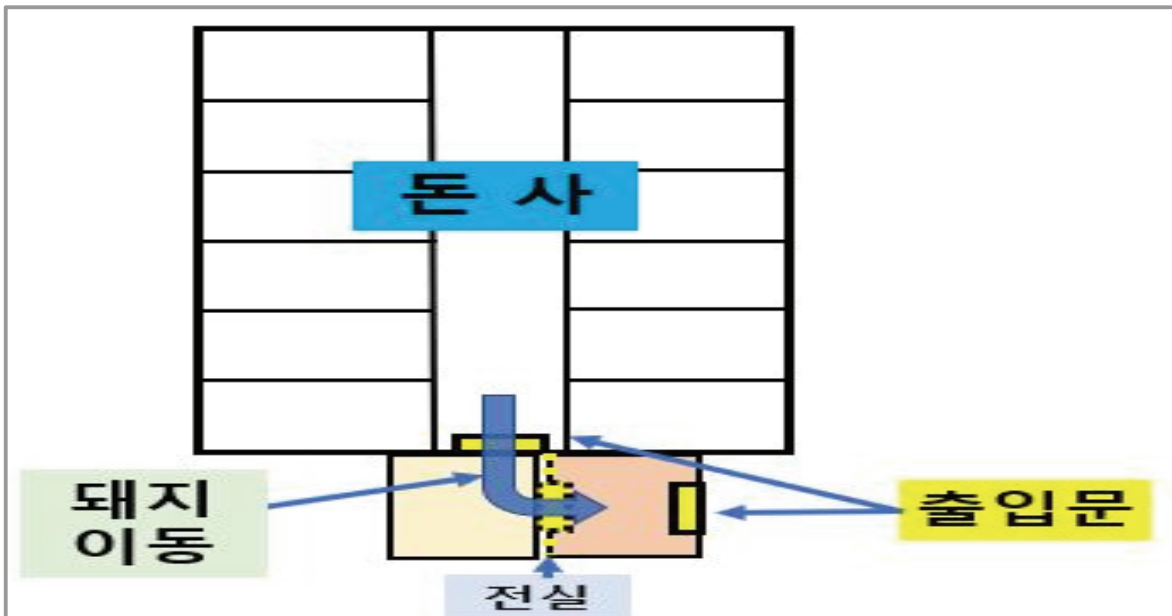
2 출입문에 돼지 이동용 출입구 설치할 경우

- 1 전실에 사람과 돼지 출입로를 구분하여 각각 문을 설치하거나, 2 하나의 출입구 사용 시 돼지 이동할 때만 칸막이를 치우고 통로로 이용, 단 돼지 출입 후에는 소독 철저



〈①번 사례〉

돈사 출입문은 공동으로 이용하되, ①전실 내부에 별도 출입문을 설치, ②돼지 출입시에만 일부공간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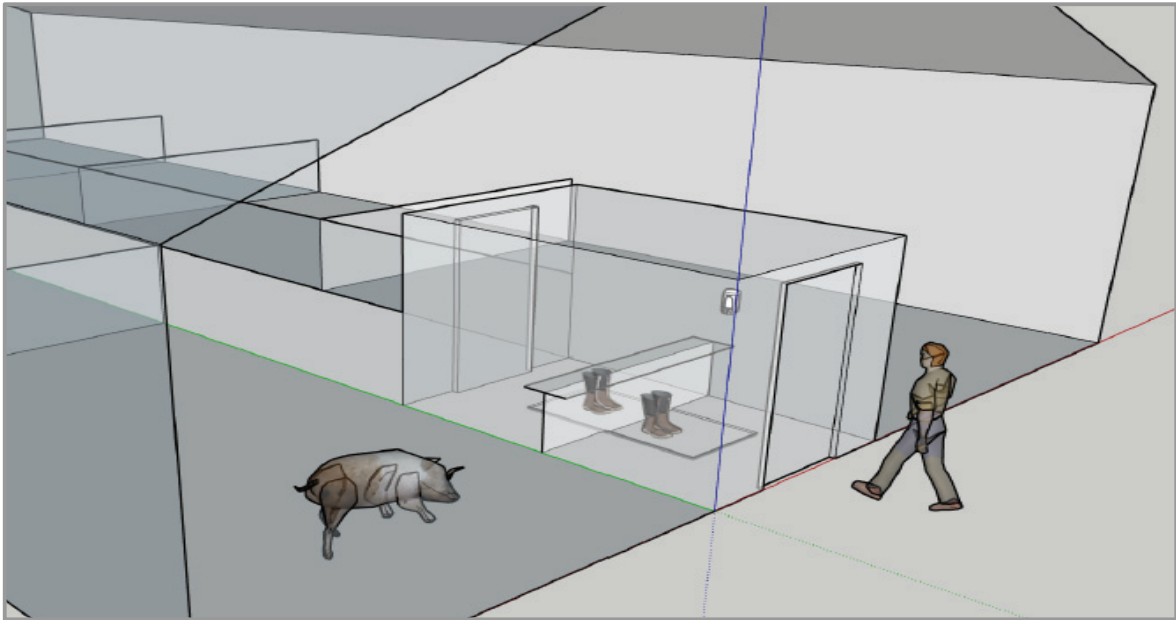


〈②번 사례〉

사람과 돼지 이동 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돼지 이동 시에는 칸막이를 치우고, 돼지 이동 후 소독을 실시하고 칸막이 재설치

3 전실을 내부에 설치할 경우

- 돈사 외부에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돈사 내부에 전실을 설치
 - 오염원이 돼지 사육공간(돈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실의 출구와 입구에 각각 문을 설치하여 돼지 사육공간과 차단된 별도 공간 마련



〈돈사 내부 전실설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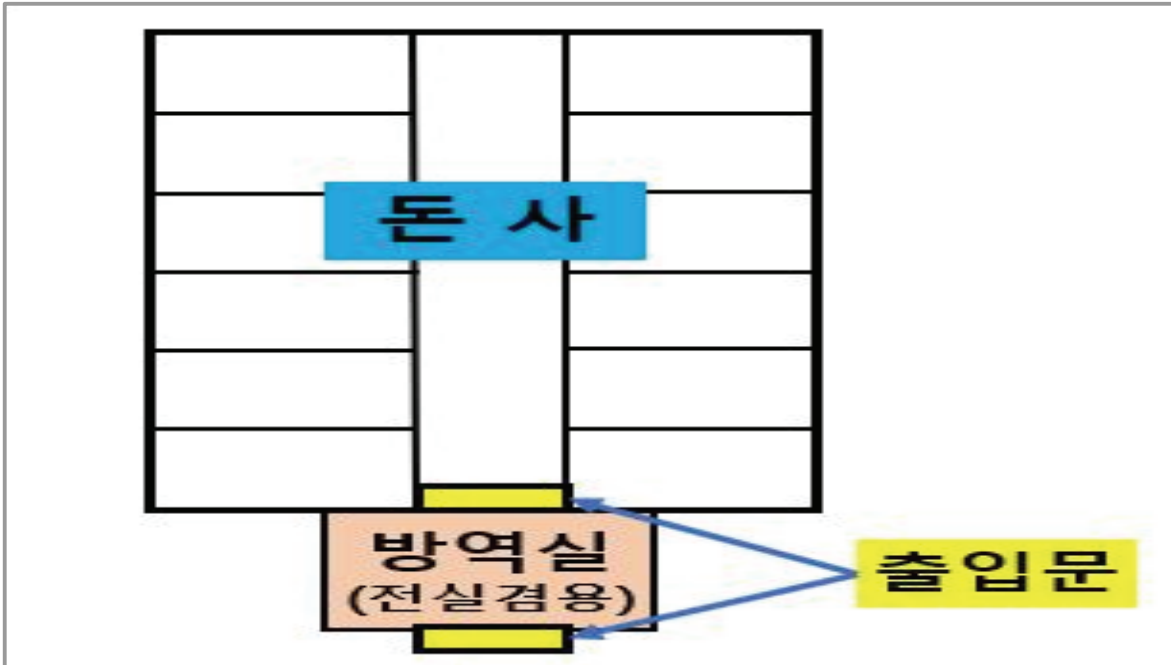


〈돈사 내부 전실설치 사례〉

④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

■ 1개 동의 축사에서만 돼지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축사에 전실을 따로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과 전실 겸용〉



(예시) 축사 1개동, 축사 출입구가 1개이며 도로에 인접한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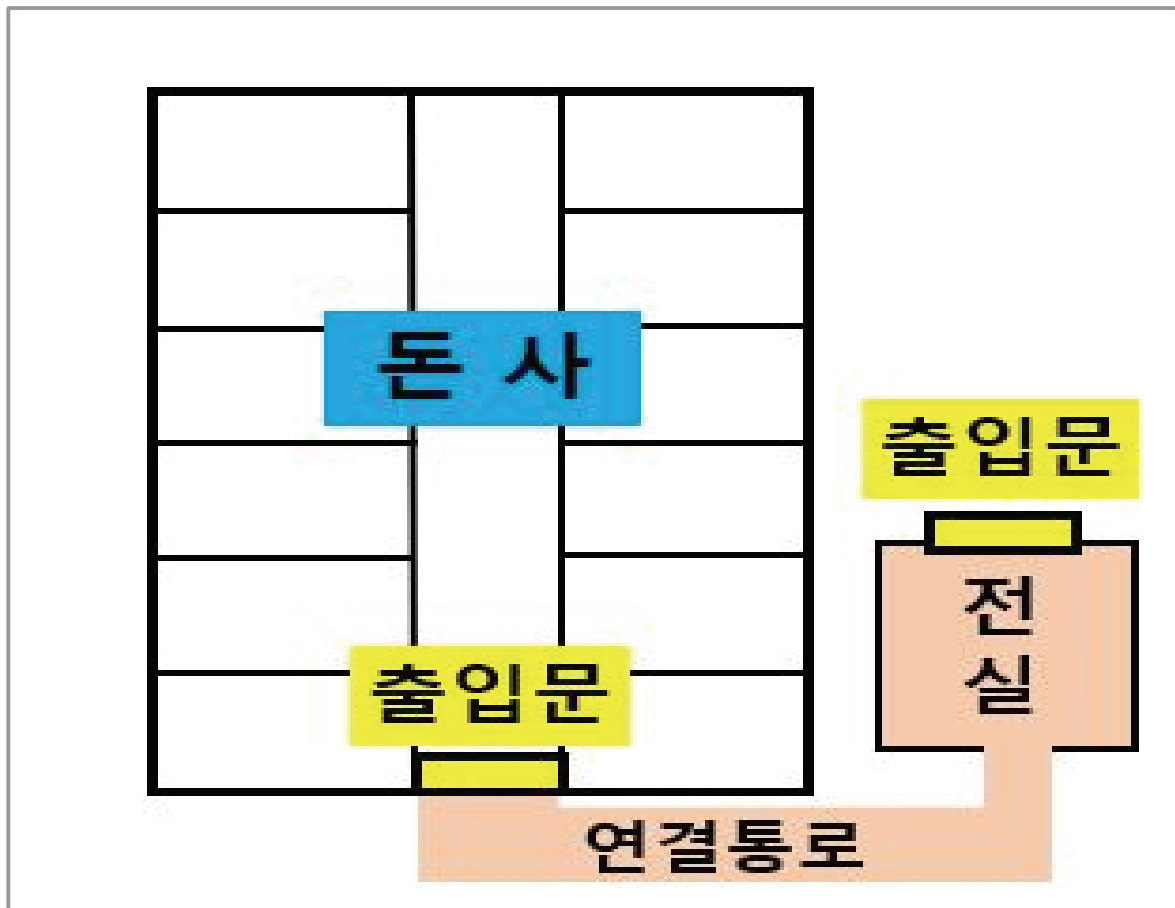
5] 돈사 출입구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설치할 경우

■ 축사 구조상 출입구에 공간이 없어 '연결된 구조'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전실을 사육시설과 분리된 위치에 설치하여 사육시설과 연결

- 전실을 사육시설 출입구가 아닌 곳에 설치한 후 연결로*를 설치하여 사육시설 출입구까지 연결(공동전실 개념의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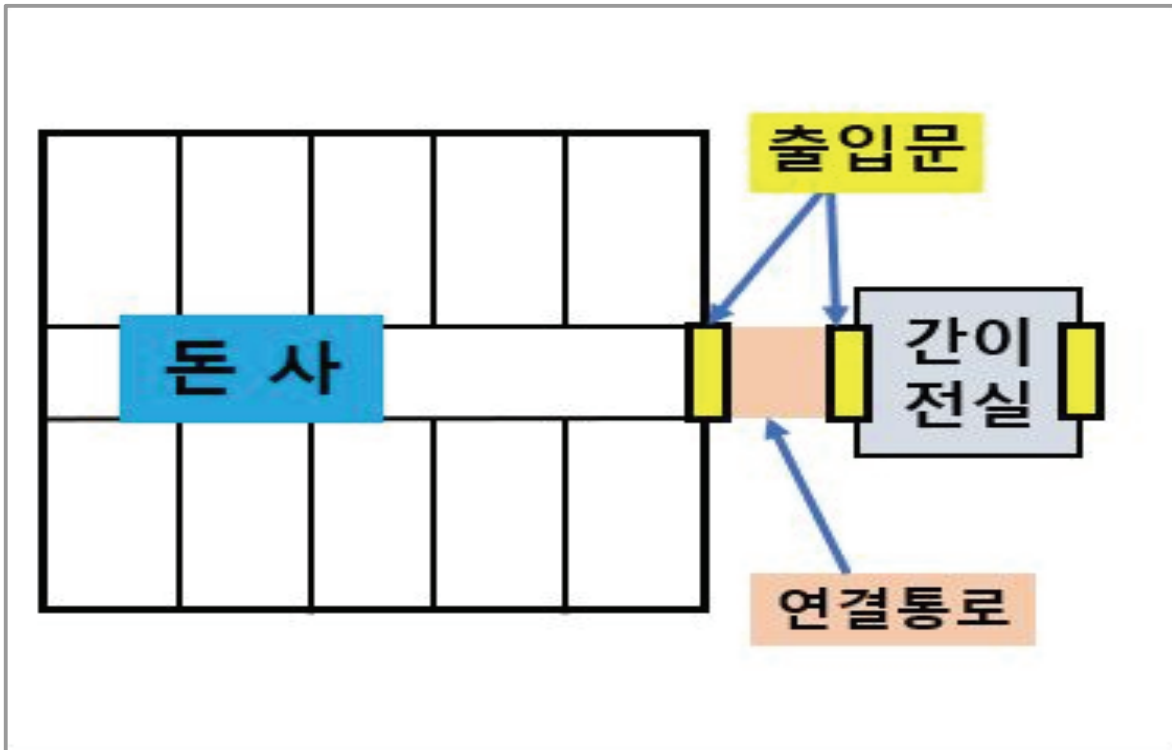
* 연결로 설치 기준

- 1) (바닥) 소독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여야 함
- 2) (지붕·외벽) 내구성 있는 재질로 외부인·야생동물·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이의 차단벽, 비가림시설 및 방조망을 설치
- 3) (내부) 전실과 동일한 수준의 청정상태 유지



〈돈사 출입구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설치할 경우〉

- 간이전실을 설치하여 돈사 입구와 매우 좁은 공간이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차광막, 비닐 등으로 차단할 수 있음



〈간이전실 활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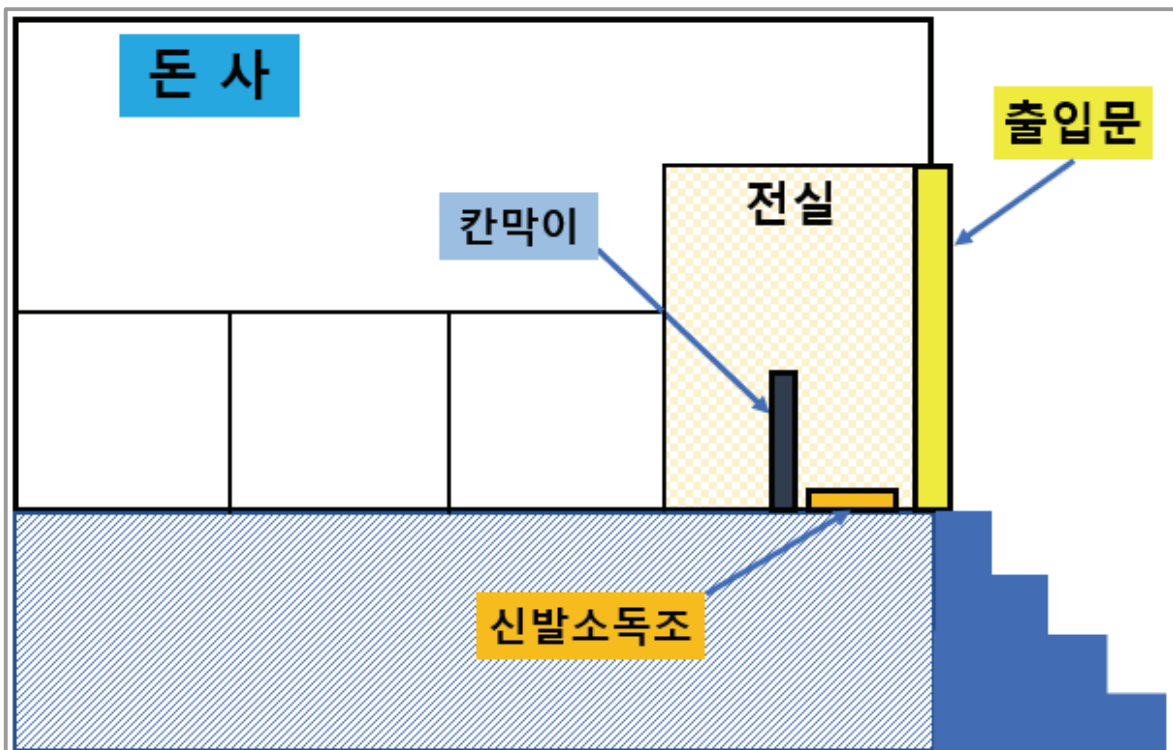
(예시) 간이전실 활용 가능 구조물

⑥ 돈사 출입문이 계단 위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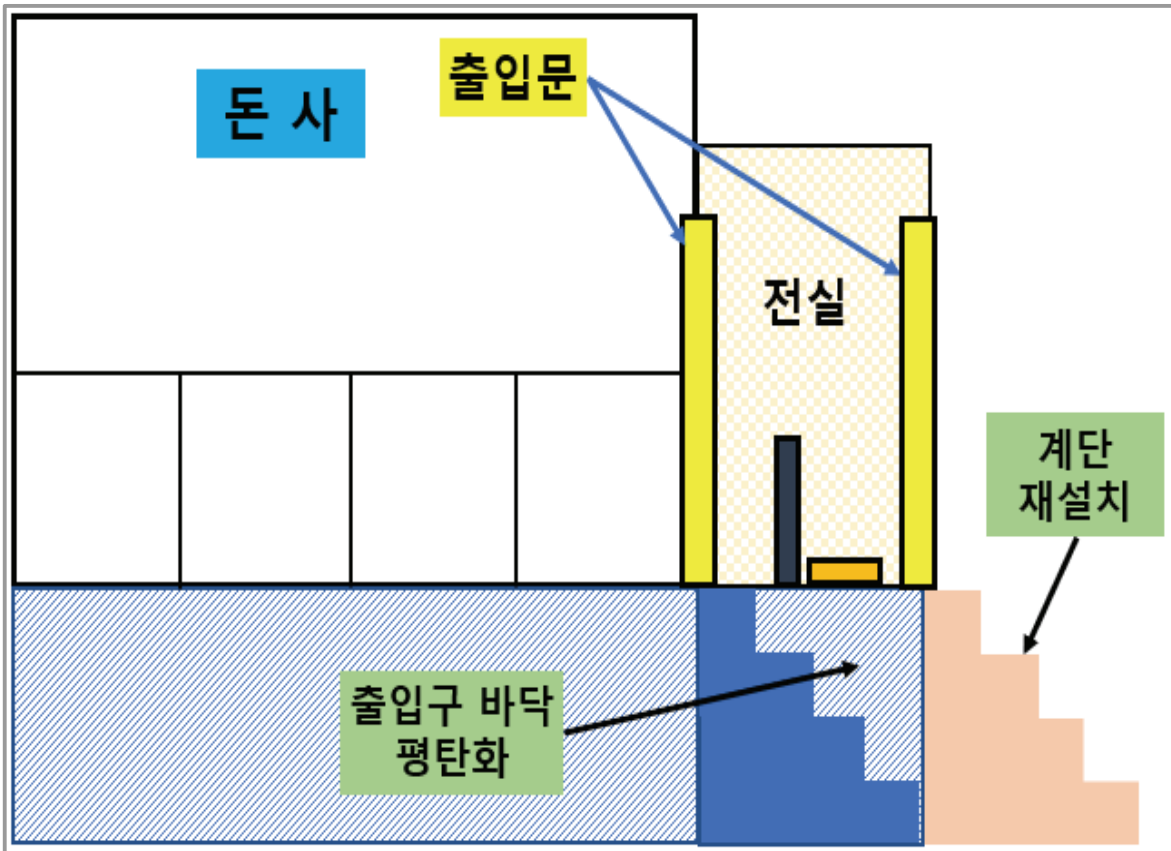
- ☐ 돈사 내부 복도 등에 전실(간이전실 포함)을 설치하거나, 입구 바닥을 출입문 높이로 높인 후 설치, 또는 계단을 포함해 전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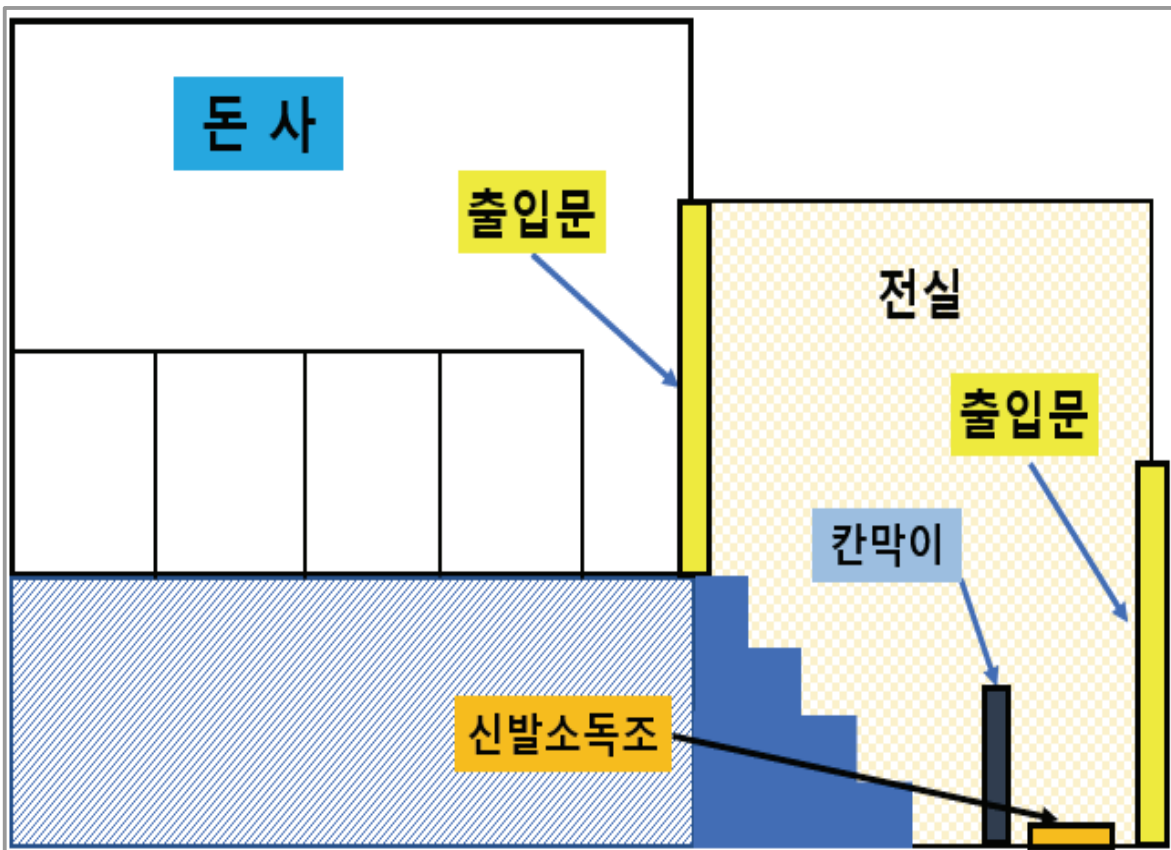
〈돈사 출입문이 계단 위에 있는 경우〉



① 돈사 내부에 전실 설치



② 출입문 바닥을 돋움하여 전실 설치 후 전실 밖에 계단 재설치



③ 계단을 포함하여 전실 설치

Ⅱ | 내부울타리 설치 기준 및 사례

1 필요성

- 외부에서 바이러스 등 차량이나 사람 등을 통해 돼지 사육구역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내부울타리 설치 필요
 - 내부울타리 설치를 통해 돼지가 사육되는 구역과 축산차량 등이 진입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

2 규정에 따른 설치

- (기준) 높이와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사육시설 및 사료 보관통 외곽에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
 - (높이) 지상으로부터 1m 이상 또는 사람이 쉽게 넘어 다니기 어려운 높이
 - (이격거리) 사육시설과 1.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 (우수설치 사례) 이격거리 준수, 견고한 자재를 활용하여 설치
 - 강판 등 견고한 자재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사료빈을 포함하여 이격거리 1.2m를 준수



〈추천사례 1〉



〈추천사례 2〉

□ (일반 사례) 철망, 차광막 등을 활용하여 이격거리 1.2m를 두고 설치



〈일반 사례 1〉



〈일반 사례 2〉



〈일반 사례 3〉

3 간소화한 설치 방법

.....

- ❑ (내용) 일정간격으로 지주대 등을 설치하고, 그물망 등으로 둘러친 형태로 농장이 좁아 1.2m 이격거리를 두지 못한 사례
- ❑ (설치방법) 내부울타리는 준청결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외부울타리와 달리 농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가능
 - 강판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고, 일정간격을 두고 기둥을 견고하게 설치한 후 차광막, 그물망 등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
- ❑ 사육시설·사료빈 등과 이격거리를 1.2미터 이상 두고 설치하여야 하지만, 필수적인 차량동선 등 감안 시 설치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격 거리를 좁혀 설치 가능



〈간소화 사례 : 기둥 및 그물망 설치〉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수정안 신규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 (제3조의5제5항 관련)</p> <p>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가. ~ 나. (생 략)</p> <p>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p> <p>라. ~ 바. (생 략)</p> <p>2. (생 략)</p> <p>3. 내부 울타리 가.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나.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p> <p>다. (생 략)</p> <p>4. ~ 6. (생 략)</p>	<p>■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 (제3조의5제5항 관련)</p> <p>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가. ~ 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이거나 평상 형태의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p> <p>라. ~ 바.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내부 울타리 가. ----- ----- ----- ----- -----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나. 내부울타리는 지면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 ----- ----- ----- -----.</p> <p>다. (현행과 같음)</p> <p>4. ~ 6. (현행과 같음)</p>

현 행	수 정 안																												
<p>■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p> <p style="text-align: center;"><u>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u> (제20조제1항 관련)</p> <p>1. 공통기준 가. ~ 나. (생 략)</p> <p>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p> <p>(1) (생 략) (2) 돼지 사육업</p>	<p>■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p> <p style="text-align: center;"><u>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u> (제20조제1항 관련)</p> <p>1. 공통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p> <p>(1) (생 략) (2) 돼지 사육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소독시설</td> <td>(가) ~ (마) (생 략)</td> </tr> <tr> <td></td> <td>(가) ~ (나) (생 략)</td> </tr> <tr> <td></td> <td>(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td> </tr> <tr> <td></td> <td><신 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방역시설</td> <td></td> </tr> <tr> <td></td> <td><신 설></td> </tr> <tr> <td></td> <td><신 설></td> </tr> </table>	소독시설	(가) ~ (마)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신 설>	방역시설			<신 설>		<신 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소독시설</td> <td>(가) ~ (마) (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가) ~ (나) (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다) <u>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라)의 내부 울타리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u></td> </tr> <tr> <td></td> <td>1) <u>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방역시설</td> <td></td> </tr> <tr> <td></td> <td>2) <u>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u></td> </tr> <tr> <td></td> <td>3) <u>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u></td> </tr> </table>	소독시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라)의 내부 울타리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u>		1) <u>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u>	방역시설			2) <u>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u>		3) <u>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u>
소독시설	(가) ~ (마)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신 설>																												
방역시설																													
	<신 설>																												
	<신 설>																												
소독시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라)의 내부 울타리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u>																												
	1) <u>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u>																												
방역시설																													
	2) <u>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u>																												
	3) <u>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u>																												

현 행	수 정 안
<p>〈신 설〉</p>	<p>4) 「기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신 설〉</p>	<p>(라)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시설별로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실을 방역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p>
<p>〈신 설〉</p>	<p>1) 내부 울타리는 지상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또는 사람이 쉽게 넘어 다니기 어려운 높이로 설치하고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으며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p>
<p>〈신 설〉</p>	<p>2) 「기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p>

현 행	수 정 안
	<p>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신 설〉</p>	<p>3) 시장·군수·구청장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기가 현저히 어렵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내부울타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p>
<p>〈신 설〉</p>	<p>(마)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p>
<p>〈신 설〉</p>	<p>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p>
<p>〈신 설〉</p>	<p>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p>
<p>〈신 설〉</p>	<p>3)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뀌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p>
<p>〈신 설〉</p>	<p>4)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p>
<p>(라)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p>	<p>(바)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p>

현 행	수 정 안
<p>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p>	<p>테이너,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마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신 설〉</p>	<p>(사) 손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사육시설 각 동별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마)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신 설〉</p>	<p>1)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실의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각 사육시설 앞에 전실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할 수 있다.</p>
<p>〈신 설〉</p>	<p>2)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이거나 평상 형태의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p>
<p>〈신 설〉</p>	<p>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p>
<p>〈신 설〉</p>	<p>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또는 신발을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p>

현 행	수 정 안
<p>〈신 설〉</p>	<p>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p> <p>5)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p>
<p>〈신 설〉</p>	<p>(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구비할 것</p>
<p>〈신 설〉</p>	<p>(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p>
<p>〈신 설〉</p>	<p>(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p>
<p>〈신 설〉</p>	<p>(카)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율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율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율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율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p>
<p>〈신 설〉</p>	<p>1)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p>
<p>〈신 설〉</p>	<p>2)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p>

현 행	수 정 안
<p>〈신 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사)의 “전실”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9)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규칙 별표1의10 제2호가목(2)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차)의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규정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p> <p>③ 이 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라)의 3)과 (사)의 1)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돼지사육업자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2년 이내) 적용한다.</p>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 전실·내부울타리 중심